성동구



수신자 내부결재

(경유)

제목 사근제1구역주택재개발(해산)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
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승인 취소된 사근제1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제15조의4제8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보조금 지급계획을 주민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람공고하고자 합니다.

가. 지급신청 내용

- 신 청 인: 사근제1구역주타까밤(해산)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라수
- 보조금액: 47,524,110원
- 지급신청금액: 47,524,110원
- 신 청 일: 2014.12.24

나. 지급계획

- 승인취소 추진위원회: 사근제1구역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
- 지급대상: 사근제1구역주타까밤(해산)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 대표자 김당수
- 지급금액: 47,524,110원
- 지급방법: 신청대표자 신청계좌로 계좌이체
- 지급일자: 2015. 2. 2. 예정

다. 공람공고

- 공람기간: 2015. 1. 8. ~ 2015. 1. 23
- 공띾 및 공고내용: 공띾공고(아) 별첚
- 공띾방법: 구보 및 게시판(구청, 사근동), 주택과 홈페이지 공고

붙임: 공람공고(안) 1부. 끝.

